

## 유학 (D-2-1 내지 D-2-4)

### 신청 요건:

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, 대학,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(전문학사)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.

유학 비자로 대한민국 입국을 희망하는 모든 몽골 거주자는 **비자신청센터**를 통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 유효기간이 6개월인 단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몽골 국적의 비자 신청인은 반드시 최종 학력 증명서 및 성적표 원본을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에 제공 및 제출해야 하며, 해당 서류는 비자 심사 완료 후 여권과 함께 반환됩니다.

### 신청인 준비서류

1. 사증발급 신청서 (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.5x4.5cm 컬러사진), 수수료 \$60(정부초청장학생·국방부 수탁 생·코이카 연수생 제외)
2. 여권 원본 및 사본 (사증신청일로부터 최소한 6개월 동안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)
3. 자기소개서(대사관 양식, MS Word 또는 한글 문서편집기 사용, 반드시 자필서명)
4. 표준입학허가서 및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
5. 유학경비 부담능력 입증자료
  - 본인 또는 유학경비부담자의 몽골 은행 잔고증명서(사증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)
  - ※ 예치 증명서 발급일 기준 미화 \$20,000(수도권), 미화 \$18,000(비수도권)상당액을 반드시 30일 이상 유지해야하며, 심사일 현재 예치 증명서에 기재된 예치일로부터 예치증명서 발급일\*까지 예치기간이 30일 미달하는 경우 재정능력 미흡(예치규정 위반)
  - \*예치증명서에 증명서 발급일이 명확하게 기재 되어야함
  - ※ 배우자 보증은 불가능함. (단, 한국에서 합법적인 근로자로 거주하는 경우 가능)
  - 보증인 1, 2:
    - 신분증 및 신청인과의 관계 입증서류(3촌 이내)
    - 유학경비 지원확인서 및 재직증명서
    - 유학경비 부담자의 월수입 입증자료(사회보험증, 납세증명서 등)
6. 혼인관계증명서 (최근 45일 이내 발급)
  - 미성년자(19세 미만 자)의 경우, 본인의 출생등록조회서(부모의 생년월일이 미 기재된 경우 부모 신분증 사본 제출)
  - ※ 자녀가 있는 미혼자는 자녀의 출생등록 조회서 추가제출
7. 무범죄증명서 (최근 45일 이내 발급) (만 18세 이상, 최초 신청자에 한함)
8. 결핵 진단서 (당관 지정기관 발행)
9.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원본
  - 대학 재학생/중퇴자 : 고등학교 졸업장, 대학 재학증명서, 전 학년 성적증명서
10. 어학능력 입증서류(대상대학 경우에만 해당, 2019.10.01.부터 적용)
  - 한국어능력
    - 전문대학: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3급/세종학당 한국어 5급(중급1) 이상
    - 대학/대학원: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4급/세종학당 한국어6 (중급2) 이상
  - 영어능력
    - TOEFL 530 (CBT 197, IBT 71), IELTS 5.5, CEFR B2, TEPS 600